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정당 현수막에 부착해야 할 사항 및 표시기간 제한 규정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 성 자	이름	도은비
	담당부서 (과)	생활공간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광용		연락처	044-205-3544
	과장	이준식		이메일	dsilverain0@mail.go.kr

2022. 06. 30. 작성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정당 현수막에 부착해야 할 사항 및 표시기간 제한 규정 신설																	
	2.규제조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신설)																	
	3.위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헌법상 정당활동 자유의 보장을 위해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금지·제한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 ○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구체화함																	
	7.규제내용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내용에 대한 현수막(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규정함 - 정당 현수막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표지에는 현수막 표시 장소, 기간, 연락처를 작성함 - 정당 현수막은 14일 이내로 표시함 - 표지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정함																	
	8.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정당</td><td>45개 (등록 정당 수)</td></tr><tr><td>관련기관</td><td>지자체</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일반 국민</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옥외광고사업 등록자</td><td>17,697개 사 (20.12.31.기준)</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정당	45개 (등록 정당 수)	관련기관	지자체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17,697개 사 (20.12.31.기준)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정당	45개 (등록 정당 수)																
관련기관	지자체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17,697개 사 (20.12.31.기준)																	
9.규제목표	○ 헌법, 정당법상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관리기준(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기간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적용배제) 법 제8조제8호 에 따른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시장 등이 발행한 표 지에 표시장소, 표시기간, 표시자 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4일 이내 로 한다. 3. 표지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헌법상 정당활동 자유의 보장을 위해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금지·제한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
- (개입 필요성) 도시 미관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구체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내용)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여, 14일 이내로 표시하며, 표시 신청 절차는 행안부 장관이 정함
 - (근거) 「공직선거법」 제67조의 선거 운동 현수막과 표시방법 및 표시기간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함
- ※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측에서도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참조하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자체(시도)	'22.2월, 비대면	정당 현수막의 설치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안전문제가 우려됨.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확한 설치 관리 기준이 필요함	수용
국회의원	'21.11월, 행안위 법안소위	정당 현수막을 허용하되 행안부에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함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3월, 공문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참조하여 관리방안 마련	수용

3. 규제목표

- 헌법상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되,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기준(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기간 등)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해당 규제는 헌법상 정당활동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를 허용하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정당의 표지 부착을 통해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의 구분이 용이해지므로,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정비 업무 효율이 향상됨과 동시에 불법 현수막의 철거를 통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 가능함
- 표시기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조항 각호의 다른 광고물은 행사나 집회,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 내에 게시하는데 반해, 정당 현수막은 특정 일정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광고물과 달리 표시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표지 부착 및 14일 이내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 설치시에도 이용되는 표시방법이므로(공직선거법 제6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정도로 볼 수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한정적 기한 내에만 시행하는 성격의 규제라고 볼 수 없으며,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의 선거 현수막 설치기준을 참고한 것이므로, 향후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공직선거법 제6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합법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중요 가치로 하는 정당 및 정치인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심사 없이 표지 배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표지 발행을 위한 연간 총 예산이 약 3억 3천만원 가량 소요될 전망
이므로(각 자치단체 부담시 약 146만원 소요), 각 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임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활동 보장을 위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금지·제한의 적용이 배제됨 ('22. 6. 10. 공포, '22. 12. 11. 시행)
-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선관위 의견수렴 ('22. 1. 21.)
- 정당 현수막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22. 2. 8., '22. 6. 30.)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헌법, 정당법 상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표시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타법 기준을 참고한 것이며, 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과 비교했을 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신설이 필요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표시방법(표지 부착), 표시기간(14일 이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438.19		438.19
총 합계		438.19		438.1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표시방법(표지 부착), 표시기간(14일 이내)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당
활동제목	정당 현수막 표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등에게 표지발행을 신청하고 배부받아 현수막에 부착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 정당이 표지발행 신청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심사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당
활동제목	정당활동 자유 보장
편익항목	정당활동 자유 보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고제 하에서 정당은 현수막 설치를 위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했으며, 효과적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 표시가 불가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 적용 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현수막을 통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정책 홍보, 당원 모집 등)이 보장되며, 구체적 표시방법(표지 부착) 규정을 통해 외관상 불법 현수막과 차별화된 지위를 갖게 되어 정당 현수막의 안정성이 확보됨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옥외광고사업자
활동제목	합법적 정당현수막 제작, 설치 증가

편익항목	매출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당 현수막의 적용 배제 조항 신설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됨 ※ 다만, 기존에 신고 없이 설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매출 증가분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③정부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지자체
활동제목	정당 현수막 표지 제작 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438,197,76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표지 구매비용 단가(원)X 시군구별 연간 정당 현수막 수X 시군구 수X부가세율(10%)(120*14,560*228*1.1)
근거설명	○ 정당 현수막의 예상 설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선거 종류와 후보가 많은 지방선거 기간에 부착한 선거 현수막의 개수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22.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표지를 교부받고 전국에 설치된 현수막의 개수는 약 12만 8,000여개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평균적으로 각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당 2주간 560개의 현수막이 부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정당 현수막의 경우, 14일 이내 표시기간으로 연속해서 최대한 부착시 동일 위치에 연간 약 26회 부착 가능하고 (365÷14), 각 시군구 당 연 14,560개 (560*26=14,560)를 부착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표지 단가를 120원으로 할 때(유포지 스티커, 150mmx150mm 기준), 각 자치단체별로 연간 표지 발행을 위해 드는 비용은 약 174만 7200원(부가세 포함시, 192만1920원)이며, 총 비용은 3억 9836만 1600원(부가세 포함시, 4억 3819만 7760원)임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주민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편익항목	주민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당 현수막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증가로 인해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나, 표시 방법과 기간 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과의 구분이 용이해져 불법 현수막 정비 업무 효율이 개선되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설치를 방지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